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 요약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51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강화, 의료자문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음. 그 밖에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지만,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1.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제20대 국회<sup>1)</sup>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 1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나머지 51건의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음
  -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sup>2)</sup>으로는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사정사 교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있음

### 2.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주요 법안의 내용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에서 처리되지 않은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관련)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의료비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
  - (설명 의무 관련)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

1) 2016. 5. 30.부터 임기 개시함

2)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법안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안 포함

- (의료자문 관련)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도입하는 내용
  - (부당차별 금지 관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음
- (손해사정 비용 부담 관련)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결과가 소비자 측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
  - (자기손해사정 금지 관련)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보안성·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비율 내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는 내용
  -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를 금지하는 내용
- 그 밖에 주요 미처리 법안에는 대형 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보험료 카드납 관련 근거 규정 도입,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에 관한 법안들이 있음
- 위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그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나,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백영화 연구위원  
pyh@kiri.or.kr

## 별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1	2000395	2016. 6. 22. (이종걸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산운용비용 산정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용(예: 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산정 시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은 '시가' 기준, 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도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li> <li>- 다만 부칙으로 일정한 경과기간(7년) 부여</li> </ul> </li> </ul>	-
2	2000833	2016. 7. 12.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자는 내용</li> <li>-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도록 함</li> </ul> </li> </ul>	-
3	2001704	2016. 8. 19.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업무 재위탁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업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제3자에게 재위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이 업무 재위탁을 통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상황이 발생함에 대하여 우려</li> <li>- 이에 보험회사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재위탁을 허용하자는 내용</li> </ul> </li> </ul>	-
4	2002342	2016. 9. 20. (김정재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 부담원칙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li> <li>-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상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li> </ul> </li> </ul>	-
5	2002931	2016. 10. 26. (김영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과태료와 과징금 병과)</li> <li>- 중복계약 체결 확인 내용을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리는 방안(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함)도 함께 제안</li> </ul> </li> </ul>	-
6	2003104	2016. 10. 31. (김종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초서류 신고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기초서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li> </ul> </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7	2003509	2016. 11. 11. (박완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변경 관련</b></li> <li>-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li> </ul>	대안반영 폐기 (→28번)
8	2004008	2016. 11. 30.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 관련</b></li> <li>-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 금액 인상(예: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연간수입보험료의 20% → 50%)</li> <li>-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5천만 원 → 1억 원)</li> </ul>	가결 및 공포
9	2004128	2016. 12. 6. (김종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준약관 관련</b></li> <li>- 표준약관을 보험협회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제정),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제·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우려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li> </ul>	-
10	2004948	2017. 1. 3. (김영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산운용비용 산정 관련</b></li> <li>- 1번 이종결 의원안(의안번호 2000395호)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비용 산정 시 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도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li> <li>- 한편, 자산운용비용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 경과기간을 두지 않음</li> </ul>	-
11	2005110	2017. 1. 16. (김해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명 의무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음</li> <li>- 개정안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단계 등에서도 설명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li> <li>- 또한 설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보험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변경할 것을 제안</li> </ul>	-
12	2005272	2017. 1. 25. (민병두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계약자 부당차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관련</b></li> <li>-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li> <li>-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 추가</li> </ul>	-
13	2005975	2017. 3. 3. (정태욱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관련</b></li> <li>-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금융위원회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자는 내용</li> <li>-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함</li> </ul>	-
14	2006199	2017. 3. 16. (이종결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관련</b></li> <li>- 현재는 투자재원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아서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손익을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유배당보험계약자, 무배당보험계약자,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li> <li>- 유배당보험계약의 경우, 과거 투자자산에 많이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산투자손익의 배당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li> <li>- 이에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투자손익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산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자는 내용</li> <li>- 기존 자산에서의 투자손익도 취득시점의 책임준비금 구성 비율로 배분하도록 함</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15	2006897	2017. 5. 17. (최도자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사의 의무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도록 하면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도록 규정</li> <li>-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li> </ul>	대안반영 폐기 (→23번)
16	2006934	2017. 5. 18. (장정숙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벌금액 인상 관련</b></li> <li>-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li> </ul>	가결 및 공포
17	2006986	2017. 5. 23.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산업의 자율·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관련</b></li> <li>-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외국환,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비율 규제 폐지</li> <li>-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자회사가 될 금융기관의 설치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승인 신고 절차 면제, 자산운용 관련 회사(부동산 리츠 회사 등)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li> <li>- 보험회사의 경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받은 금융업무 경영하는 경우 신고,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면제</li> <li>-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함</li> <li>-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li> <li>-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제도 신설: 현재 보험약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 제도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적용</li> <li>- 보험계약 이전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자에 대한 통지도 하도록 함</li> <li>-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금지 조항에 예외 사유 신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계약 이전 등의 경우 예외 인정</li> <li>-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공제 관련 협의 요구 범위를 기존 기초서류 외에 재무건전성으로 확대</li> </ul>	-
18	2007111	2017. 5. 31.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b></li> <li>-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과 유사한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li> </ul>	-
19	2007501	2017. 6. 21.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사의 의무 관련</b></li> <li>-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에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부당하게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li> </ul>	대안반영 폐기 (→23번)
20	2007530	2017. 6. 22.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비용 부담 관련</b></li> <li>-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제9-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사정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보험업법에서 직접 규정</li> <li>- 보험계약자 측이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측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li> </ul>	-
21	2008537	2017. 8. 16. (채이배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은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조항만 두고 있어,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 원)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가결 및 공포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22	2011262	2018. 1. 3.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변경 관련</b></li> <li>-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용어로 변경</li> <li>-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등록 가능하도록 개정(현행은 등록 취소 후 2년간 등록 불가)</li> </ul>	대안반영 폐기 (→28번)
23	2011636	2018. 1. 30. (정무위원장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사의 의무 관련</b></li> <li>- 15번 최도자 의원안(의안번호 2006897호)과 19번 박용진 의원안(의안번호 2007501호)을 통합한 내용</li> </ul>	가결 및 공포
24	2011750	2018. 2. 2. (제윤경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강화</b></li> <li>-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보험회사의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일시적 중단, 고객의 폭언 등이 지속될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경고 및 응대 거부,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의 사전 고지 등)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li> </ul>	-
25	2011955	2018. 2. 13. (김성원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의무화 관련</b></li> <li>-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 위법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li> </ul>	-
26	2012240	2018. 2. 28. (김한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채무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b></li> <li>-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li> </ul>	가결 및 공포
27	2012647	2018. 3. 23. (제윤경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회사의 책임대출 및 신용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b></li> <li>- 신용공여조건 설명 의무, 과잉 신용공여 금지(소비자의 변제능력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계약 체결 금지),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실업, 질병, 사고 등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총액 수취의 금지, 자체분쟁조정기구 및 절차 마련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28	2012763	2018. 3. 29. (정무위원장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변경 관련</b></li> <li>- 7번 박완주 의원안(의안번호 2003509호)과 22번 정부안(의안번호 2011262호)을 통합한 내용</li> </ul>	가결 및 공포
29	2013100	2018. 4. 17. (이학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해당 보험회사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이 금지됨</li> <li>-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금지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내용</li> </ul>	-
30	2013764	2018. 5. 25. (박완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관련</b></li> <li>-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31	2013956	2018. 6. 20. (김관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전면허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조항 관련</b></li> <li>- 보험개발원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자격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32	2014184	2018. 7. 3. (이찬열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관련</li> <li>- 보험회사가 장기저축성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하는 내용</li> </ul>	-
33	2014246	2018. 7. 5. (박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비율 산정 관련</li> <li>- 1번 이종걸 의원안(의안번호 200395호)과 10번 김영주 의원안(의안번호 2004948)을 종합한 내용(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의 '시가' 기준 산정,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5년의 경과기간)</li> </ul>	-
34	2014607	2018. 7. 27. (이진복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지급거절을 등의 보험안내자료 기재 및 설명 의무화 관련</li> <li>-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 보험계약자와의 소송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li> </ul>	-
35	2014612	2018. 7. 30. (박선숙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신용생명(손해)보험 판매 관련</li> <li>-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신용생명(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내용</li> </ul>	-
36	2015105	2018. 8. 28. (송연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관련</li> <li>-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연된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보험업법에 명시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대상으로 하는 내용</li> </ul>	-
37	2015714	2018. 9. 21. (고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li> <li>-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38	2015856	2018. 10. 4. (채이배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li> <li>-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 시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모집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과되, 다만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거나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li> </ul>	-
39	2015926	2018. 10. 10. (박광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식 용어 관련</li> <li>-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하는 내용</li> </ul>	-
40	2016178	2018. 10. 31. (이태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의무 관련</li> <li>-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li> </ul>	-
41	2017963	2018. 12. 31. (유동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관련</li> <li>-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내용(공시 대상 및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li> </ul>	-
42	2018248	2019. 1. 18. (신상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거절 금지 관련</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43	2018363	2019. 1. 28. (전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편화 관련</b></li> <li>-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44	2018433	2019. 1. 31. (이찬열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제도 관련</b></li> <li>-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li> </ul>	-
45	2018563	2019. 2. 11. (김정훈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회사의 보험금 적정 지급 의무 관련</b></li> <li>-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금이 과잉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li> <li>-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li> </ul>	-
46	2018648	2019. 2. 15. (유동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액단기보험업 도입 관련</b></li> <li>-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보험료 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3억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li> </ul>	-
47	2018771	2019. 2. 22. (추혜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해당 보험회사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조건을 삭제하자는 내용</li> </ul>	-
48	2019372	2019. 3. 25. (전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내용</li> <li>-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li> </ul>	-
49	2019713	2019. 4. 10. (김병욱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기계약 금지 범위 확대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함</li> <li>-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추가 금지하는 내용</li> </ul>	-
50	2020087	2019. 4. 30. (김용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기기 등 물품 제공 관련</b></li> <li>-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예외로 허용해주는 내용</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51	2021046	2019. 6. 19. (신상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등의 고지의무 관련</b></li> <li>-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는데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 되면 해당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52	2021056	2016. 6. 19. (이학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 관련</b></li> <li>- 현행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⑤ 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로 정해져 있음</li> <li>-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li> </ul>	-
53	2021216	2016. 6. 28.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회사의 신고 관련</b></li> <li>-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신고, 보험개발원의 순보험료 산출 신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li> </ul>	-
54	2021684	2019. 7. 26. (신상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험업 경영 제한 관련</b></li> <li>-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담보의 기준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직접 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①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li> <li>- 이에 의하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 중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효과</li> </ul>	-
55	2021708	2019. 7. 29. (고용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b></li> <li>-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2018. 12.)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보험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지는 내용</li> </ul>	-
56	2022087	2019. 8. 23. (유동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관련</b></li> <li>-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가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을 완화하는 내용(현행 30% → 50%로 상향 조정)</li> </ul>	-
57	2022140	2019. 8. 28. (전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 관련</b></li> <li>-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 보험회사는 ①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② 소속기관 및 ③ 의료자문의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li> </ul>	-
58	2022794	2019. 10. 2. (장병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b></li> <li>-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원칙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li> <li>-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단체의 대표)와 피보험자(단체의 구성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중복보험 확인 내용을 직접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li> </ul>	-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의결 여부
59	2023708	2019. 11. 11. (전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손해사정 금지 관련</li> <li>-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li> <li>- 이를 위반하여 자기손해사정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li> </ul>	-
60	2024101	2019. 11. 29. (정태욱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요건 관련</li> <li>- 보험회사의 대주주 결격사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을 제외하는 내용</li> </ul>	-
61	2024280	2019. 12. 16. (김병욱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험 관련</li> <li>- 보험업법상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동물보험을 추가하는 내용</li> </ul>	-